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19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건 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전체회의 상정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1114 | 정부 | 2024.6.28. | 2024.8.20. |
| | 2202680 | 김도읍 | 2024.8.9. | 소위 직회부 |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 (안 제55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5조(벌칙) <u>제13조를</u> 위반한 자 | 제55조(벌칙) <u>제13조제1항을</u> |
|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
| 다. | . |
|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 |
|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 | 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 |
| 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 | <u> </u> |
| 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 | |
| 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 | |
|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부과한다. | |
| | |
| ③ 삭 제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